

#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2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제안이유

- 도 여성회관 청사이전후 시군여성회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도 전체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 실시
- 지방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시설사용료 대여사업 및 위탁교육비 신설
- 21세기를 향한 여성의 역할증대와 여성전문기능인 양성을 통한 건전사회 생활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발전 도모

## 주요골자

- 제1조 (설치) 영세여성 자립기반 조성 → 지역여성 능력 개발과 다기능적인 여성공동의장 활용
- 제2조 (위치)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-146 → 청주시상당구 지북동 355-17
- 제3조 (업무)
  1. 여성기술인력양성  
→ 여성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 조성
  2. 여성교양강좌 및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 
→ 여성사회교육 및 각종 토론회 개최
  3. 여성의 신상상담 및 직업보도  
→ 교육수요자들의 욕구에 맞는 위탁교육실시
  4. 부녀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 
→ 여성정보자료실 운영
  5.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 
→ 여성기술인력 양성
  6. 각종시설물 대여사업
  7.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

○ 제6조 (시설사용료 및 수강료)

- 예식장사용료 평 일 9,000원  
공휴일 10,000 " } → 대강당 50,000원  
강의실 20,000 "  
예절실 30,000 "
- 수 강 료 기술교육 3,000원 → 10,000원  
기타교육 5,000 "
- 전문교육 신설 → 1인 1주(4시간) 20,000원  
2주(8 " ) 30,000 "
- 위탁교육비 신설

의안전문 : 별첨

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#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(설치) 지역 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,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공동의 장을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회관 (이하 “여성회관”이라한다)을 둔다

제2조 (위치) 여성회관은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~17번지에 둔다.

제3조 (업무) 여성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
2. 여성사회교육 및 각종 토론회 개최
3.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는 위탁교육 실시
4. 여성 정보자료실 운영
5. 여성기술 인력 양성
6. 각종 시설물 대여사업
7.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및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

제4조 (관장)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도 감독한다.

제5조 (공무원) 여성회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 (시설사용료 및 수강료) ① 여성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설물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, 기술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관장은 여성회관에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와 기술교육, 전문교육 시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수강료를 징수한다.

③ 제2항의 시설사용료와 수강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기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

④ 시설사용의 경우 부득이 사용자가 형편에 의거 날짜와 시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야 한다

제7조 (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)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강당, 강의실 및 기타 시설물의 사용료와 기술교육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2.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시
3.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 모자세대

② 전문교육의 수강료 면제는 도 여성회관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에 한하며,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면제는 동일기관·단체에 대하여 월 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.

제8조 (위탁관리)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를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.

제9조 (위탁교육) ①관장은 각급 공공기관, 기업체 또는 단체등에서 요구하는 과목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 할수 있다.

②제1항의 위탁교육신청은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허가를 득하고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요금을 징수한다.

제10조 (강사초빙) ①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 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서식)

#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

계	계장	관장	결
			재

1. 시설명	대강당, 강의실, 예절실		
2. 사용일시	19년 월 일 시 ~ 월 일 시까지		
3. 사용예정인원	명	4. 사용목적	

## 5. 사용자 (개인 또는 단체)

주소			단체명		
성명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		대표전화	

## 6. 사용자 납부

사용료	"수입증지" 원	
-----	----------	--

19년 월 일

신청자주소 :

성명 : (서명 또는 날인)

충청북도여성회관장 귀하

## 시설물 사용허가 승인서

1. 시설명 :

2. 사용일시 :

사용료	원	특기사항	도 수입증지 납부
-----	---	------	-----------

위와같이 대강당, 강의실, 예절실 사용을 허가합니다.

19년 월 일

충청북도여성회관장 직인

신청인 귀하

(별표 1)

## 시 설 사 용 료

대상시설	기 준	금 액	비 고
대 강 당	1회 (2시간)	50,000원	· 매시간 초과마다 기준요금의 20%가산 · 토.일.공휴일 및 야간은 기준요금의 20% 가산 · 냉·난방비 사용시 요금별도 징수
강 의 실	"	20,000 "	
예 절 실	"	30,000 "	

### ※ 냉·난방비

- 대강당 (1회, 2시간) 30,000원
  - 강의실 ( " ) 20,000 "
  - 예절실 ( " ) 20,000 "
- } 2시간 초과시 기준요금의 20% 가산

(별표 2)

## 수 강 료

구 분	기 준	금 액	비 고
기술교육	1인, 1월	10,000원	· 영세모자세대, 영세민 면제 · 교육과정(기간)별 수강료 일시불로 선납
전문교육 과 정	1인 1주(4시간)	20,000원	· 여성회관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은 수강료 면제
	2주(8 " )	30,000 "	

(별표 3)

## 위 탁 교 육 비

구 분	기준 (1인당)	금 액		비 고
		단 체	개 인	
교육비	1주 ( 8시간 )	30~50천원	40~50천원	· 단체 : 30인이상 · 시설사용료, 교재비, 강사료, 식비포함
	2주 ( 12 " )	50~70 "	60~70 "	
	3주 ( 18 " )	70~90 "	80~90 "	

(별지 제2호서식)

# 수 강 신 청 서

사 진  
(3×4m)

제 호

과 목	과 제 기			초 급	중 급
결 재	한 글				
	한 자		주민등록번호	~	
주 소					
최 종 학 력				학 과	
세 대 주			관 계	전 화 번 호	
가 족 사 항					
성 명	관 계	년 령	직 업	비 고	
초급과정 이수 대조필 확인 / 인					
<p>신청일자 : 19 . . . . .</p> <p>성명 : (인)</p> <p>충청북도여성회관장 귀하</p> <p>제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접 수 증</p> <p>지원자 : 과목 : 과 제 기</p> <p>1. 개강년월일 : 년 월 일 시 ~ 월 일 시까지</p> <p>충청북도여성회관장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직인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취급자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(인)</span></p>					



(별지 제3호서식)

# 위탁교육 허가신청서

계	계장	관장	결 재

1. 교육 과 목	
2. 교육 일 시	19 년 월 일 시 ~ 월 일 시까지
3. 교육 인 원	

## 4. 사용자 (개인 또는 단체)

주 소		단 체 명	
성명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	대표전화

## 5. 사용자 납부

사 용 료	원	특기사항	식사비 : 기본, 별도	별도식사비	원
---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	-------	---

19 년 월 일

신청자주소 :

성 명 : (서명 또는 날인)

충청북도여성회관장 귀하

## 위탁교육 허가 승인서

1. 시 설 명 :

2. 사용일시 :

사 용 료	원	식 사 비 : 기본, 별도	별도식사비	원
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

위와같이 위탁교육 신청을 허가합니다.

19 년 월 일

충청북도여성회관장 직인

신청인 귀하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1조 (설치) <u>부녀자의 복지증진과 영세근로 여성의 경제적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여성회관(이하“여성회관”이라 한다.)을 둔다.</u></p> <p>제2조 (위치) 여성회관은 청주시 북문로 2가 116번지에 둔다.</p> <p>제3조 (업무) 여성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여성기술 인력 양성</u></li> <li>2. <u>여성교양 강좌 및 정부시책의 계몽지도</u></li> <li>3. <u>여성의 신상상담 및 직업보도</u></li> <li>4. <u>부녀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</u></li> <li>5. <u>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</u></li> </ol> <p>제4조 (관장) ① <u>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되, 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</u>                  ② <u>관장은 도지사의 명을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도감독한다.</u></p> <p>제5조 (공무원) (생략)</p> <p>제6조 (사용료 및 수강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<u>관장은 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의한 사용료와 기술교육 또는 기타 교육시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수강료를 징수한다.</u></li> <li>② <u>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</u></li> </ol>	<p>제1조 (설치) <u>지역 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,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공동의 장을 활용하기위하여 충청북도 여성회관(이하“여성회관”이라 한다.)을 둔다.</u></p> <p>제2조 (위치) 여성회관은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~17번지에 둔다.</p> <p>제3조 (업무) 여성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</u></li> <li>2. <u>여성사회교육 및 각종 토론회 개최</u></li> <li>3. <u>교육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는 위탁교육 실시</u></li> <li>4. <u>여성 정보자료실 운영</u></li> <li>5. <u>여성기술 인력 양성</u></li> <li>6. <u>각종 시설물 대여사업</u></li> <li>7. <u>정부시책의 계몽지도 및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</u></li> </ol> <p>제4조 (관장) <u>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도감독한다.</u></p> <p>제5조 (공무원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 (시설사용료 및 수강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<u>여성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의거 시설물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, 기술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수강하고자하는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</u></li> <li>② <u>관장은 여성회관에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와 기술교육, 전문교육시에는 별표 2의기준에 의한 수강료를 징수한다.</u></li> </ol>

현행	개정
<p>제7조 (사용료 면제) <u>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강당, 회의실 및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 사용에 있어서 강당과 회의실에 한하며 동일 단체에 대하여는 월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국가 또는 공공단체</u></li> <li>2. <u>여성 공익 법인 및 여성단체</u></li> <li>3. <u>요구호 대상자</u></li> <li>4. <u>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</u></li> </ol> <p>제8조 (위탁관리) ① <u>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수있다</u></p> <p>② (생략) &lt;신설&gt;</p> <p>제9조 (강사초빙) (생략)</p> <p>제10조 (규칙)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③ 제2항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<u>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미리납부하여야 하며, 기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</u></p> <p>④ <u>시설사용의 경우 부득이 사용자가 형편에 의거 날짜와 시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야한다.</u></p> <p>제7조(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)①<u>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강당, 강의실 및 기타시설물의 사용료와 수강료를 면제할수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 전문교육의 수강료 면제는 <u>도여성회관 교육계획에의한 교육에 한하며 시설사용료의 면제는 동일기관·단체에 대하여 월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수없다.</u></li> <li>1.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</u></li> <li>2. <u>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시</u></li> <li>3. <u>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 모자세대</u></li> </ol> <p>제8조 (위탁관리) ① ----- ----- 일부를 ----- -----</p> <p>②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제9조 (위탁교육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<u>관장은 각급 공공기관, 기업체 또는 단체등에서 요구하는 과목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수 있다.</u></li> <li>② <u>제1항의 위탁교육신청은 별지3호 서식에 의한 허가를 득하고 별표3의 기준에 의한 요금을 징수한다.</u></li> </ol> <p>제10조 (강사초빙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 (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## 헌 행

## 개 정

(별표1)

사용구분	기준	금액	비 고
1. 평 일	1시간	9,000원	1시간초과시에는 매30분마다 사용료의 20%가산
2. 토 요 일 및공휴일	1시간	10,000원	상 동

(별표1)

대상시설	기준	금액	비 고
대 강 당	1회(2시간)	50,000원	·매시간초과마다 기준요금의20%가산
강 의 실	"	20,000원	·토일공휴일및야간은 기준요금의20%가산
예 절 실	"	30,000원	·냉난방비 사용시 요금별도 징수

※냉. 난방비

·대강당 1회(2시간) 30,000원 } 2시간초과시  
 ·강의실 1회(2시간) 20,000원 } 기준요금의  
 ·예절실 1회(2시간) 20,000원 } 20% 가산

(별표2) 수 강 료

교육구분	기준	금액	비 고
1. 기술교육	1인1월	3,000원	·월 20일이상(1일 2시간이상) ·영세민 면제
2. 기타교육	1인1월	5,000원	·월4일이상(1일 1시간이상)

(별표2) 수 강 료

구 분	기준	금액	비 고
기술교육	1인, 1월	10,000원	·영세모자세대, ·영세민 면제 ·교육과정(기간)별 수강료 일시불로 선납
전문교육과 정	1인, 1주(4시간)	20,000원	·여성회관 교육계획에의한 교육은 수강료 면제
	2주(8시간)	30,000원	

(별표3) 위 탁 교 육 비

구 분	기준(1인당)	금 액		비 고
		단 체	개 인	
교육비	1주(8시간)	30-50천원	40-50	·단체: 30인이상 ·시설사용료, 교재비 ·강사로 식비포함
	2주(12 " )	50-70 "	60-70	
	3주(18 " )	70-90 "	80-90	